

# 식당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8.26. 개정 2021.03.31. 개정 2022.03.04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 및 학생식당, 기숙사식당(이하 “교내 식당” 이라 한다)의 운영을 위한 식당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## 제2조 (구성)

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유고 및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9.05.22.>  
<개정 2021.03.31., 2022.03.04.>
- ③ 위원회에 간사(총무팀 소속 직원) 1인을 두며 입학학생처장 및 영양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.<개정 2019.05. 22., 2022.03.04.>

## 제3조 (직무)

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식당의 소요비용 계산 및 관리
- ② 메뉴 관리 및 학생 영양지도
- ③ 교직원식당과 교내식당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
- ④ 식중독 방지 및 식품 위생 교육

## 제4조 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위원의 업무 및 책임)

각 위원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메뉴를 작성하고 메뉴개선을 위해 연구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- ④ 영양사는 양질의 영양을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식사조리 및 공급을 책임진다.

## 제6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상시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0.08.26.>
- ②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위임규정)

교내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05.22., 2022.03.04.>

제8조 (회의록작성)

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8.2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3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